

대구대학교와 국립장애인도서관의
상호 협력 협약서

대구대학교와 국립장애인도서관(이하 ‘양 기관’이라 한다)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하기로 한다.

제1조 목 적

본 협약은 장애인 대체자료 및 장애인 관련 자료 공유 등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양 기관의 상호 발전과 장애인의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협력 분야

양 기관은 다음 각 항의 업무에 대해서 적극 협력한다.

- ①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상호 자료 교환·공유 협력
- ② 양 기관의 대체자료 제작 노하우 공유 및 활용
- ③ 양 기관의 시스템 연계 및 물적 인프라 활용에 관한 협력
- ④ 지식정보 격차 해소 등의 발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직원의 교육훈련 및 연수 등의 인적 교류를 위한 협력
- ⑤ 양 기관의 시설이용에 있어서의 협력
- ⑥ 기타 상호 우호증진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3조 협력 이행

양 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협력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.

- ① 양 기관은 장애대학생의 학습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대체자료 제작 및 제공 요청 시 적극 협력한다.

- ② 자료 제공은 양 기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, 규정에 없는 경우 협의하여 정한다.
- ③ 제공된 자료는 상대기관의 동의 없이 장애인 서비스 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.

제4조 세부사항 및 협약내용 개선

양 기관은 향후 진행되는 개별 사업 및 프로젝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한다.

제5조 비밀유지

양 기관은 업무상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된다.

제6조 협의조정

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결정한다.

제7조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

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의 협약기간은 양 기관의 별도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제8조 협약의 해지

협약의 해지에 양 기관이 합의하면 그 즉시, 한 기관의 일방해지 통보가 있으면 그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 효력을 상실한다.

2016년 11월 25일



총장 홍덕률

홍덕률

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



관장 이인학

이인학

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(반포동,
국립중앙도서관 본관 1,2층)